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9
----------	------

제출년월일 : 2002.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지속적인 차량증가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급속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일부를 보완·변경하여,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 기능유지와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년도 납부실적 및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3항제4호 신설).
- 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 다.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 (안 제9조의2 신설).
- 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주차빌딩)의 경우에는 공휴일(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
- 마.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조정함 (안 별표 1).
- 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강화)함 (안 별표 3).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20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 지방세법 제6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2. 10. 04 ~ 10. 24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부설주차장 타시군과의 비교현황 1부.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각 호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차장의 전년도 납부실적과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주차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부대시설의 종류) 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내집안 주차장”다음에 “또는 노외주차장”을 삽입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5.의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4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동승) 및 4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동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동 별표 1의 “6.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동 별표 1의 “6.”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주차빌딩) : 연중 휴일없이 1일 24시간 운영

동 별표 1의 “9.”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주차빌딩)은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건축을 위한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은 이미 정한 위탁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①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이 조에서 “조례”라 한다)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외주차장의 바닥을 포장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2)조례 제4조 본문중 “제3조제1항제5호”다음에 “내지 제6호”를 삽입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외주차장의 바닥을 포장하고자 하는 자

③조례 제5조제1항중 “내집안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조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집안주차장”다음에 “및 노외주차장”을 삽입한다.

④조례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노외주차장의 경우 포장후 3년이내에 당해 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로 본다.

⑥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중 “내집안주차장 설치 자금”다음에 “(노외주차장 포장비)”를 삽입한다.

소관 실·과		교통 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통시설담당 최시영
	담당자 성명·전화	김준기 (행정 2297)

<별표 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제7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m'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 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골프 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 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m'당 1대
3. 의료시설	정신병원 · 요양소 및 격리 병원을 제외한 시설
	장례식장
4.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 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당 1대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m'초과 200m'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m'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m'를 초과하는 87m'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가구)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당 0.7대이상
6.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85m'당 1대와 세대당 0.7대중 많 은 대수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 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5대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인당 1대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인당 1대
8.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m'당 1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주차요금)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무료화에 대하여는 시장이 위치, 면적 등을 지정(해제)고시한다.</p>	<p>제2조 (주차요금) ----- ----- ----- ----- ----- <단서 삭제></p>
<p>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②(생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p>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3) ----- ----- 1. ~ 3. (현행과 같음) 4. 계약담당공무원은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각호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차장의 전년도 납부실적과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5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④ (생략) <u><신설></u> <u><신설></u></p>	<p>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주차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6조의2 (부대시설의 종류) 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9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u></p> <p>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u> 2. <u>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u> 3. <u>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u> 4. <u>건축비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0조의 규정에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u> <p>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p>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공영주차장 요금표(제2조관련)</p> <p>1. ~ 4. (생략)</p> <p>5.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등승)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상이자 등승)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p>	<p>〈별표 1〉</p> <p>공영주차장 요금표(제2조관련)</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등승)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등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다만, 4급 내지 7급의 상이자(상이자 등승) 및 4급 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 등승)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주차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1시간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p>
<p>6.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서 신설〉</p> <p>가. ~ 다. (생략)</p> <p>라. 〈신설〉</p>	<p>6. -----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주차빌딩) : 연중 휴일없이 1일 24시간 운영</p>
<p>7. ~ 8. (생략)</p> <p>9. 공휴일 및 일요일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p>	<p>7. ~ 8. (현행과 같음)</p> <p>9. ----- 다만,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주차빌딩)은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10. (생략)</p>	<p>10.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제7조관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제7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u>100㎡</u> 당 1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u>70㎡</u>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u>150㎡</u>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을 제외 한다), 업무 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u>100㎡</u> 당 1대
3.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시설	시설면적 <u>150㎡</u> 당 1대	3.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시설
	장애인식장	시설면적 <u>80㎡</u> 당 1대	장애인식장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 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u>200㎡</u> 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u>150㎡</u> 당 1대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u>130㎡</u> 초과 <u>200㎡</u>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u>200㎡</u>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u>200㎡</u> 를 초과하는 <u>130㎡</u> 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u>130㎡</u> 초과 <u>200㎡</u>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u>200㎡</u>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u>200㎡</u> 를 초과하는 <u>87㎡</u> 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전체 주거 대수가 세대(가구)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당 0.7대이상
6.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u>120㎡</u> 당 1대	6.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u>85㎡</u> 당 1대와 세대당 0.7대중 많은 대수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u>10대</u>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u>1대</u> , 육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u>15인당 1대</u>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u>100인당 1대</u>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u>15대</u>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u>1.5대</u> , 육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u>10인당 1대</u>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u>70인당 1대</u>
8.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u>300㎡</u> 당 1대	8.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u>200㎡</u> 당 1대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章 附設駐車場

第19條 (附設駐車場의 設置) ①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準都市地 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内部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 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隣近에 獨立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隣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用途·規模 및 附設駐車場의 規模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5·12·29>

⑥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한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용하는 범위안에서 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敷地로부터 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범위안에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路外駐車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⑦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6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設置費用을 減額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⑧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은 施設物의 所有者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所有者가 이를 承繼한다. <新設 2000·1·28>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⑨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費用의 算定基準 및 減額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2000·1·28>

⑩特別市長·廣城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5·12·29>

(全文改正 90·4·7)

第19條의2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 附設駐車場을 設置하는 者는 施設物의 建築 또는 設置에 관한 許可·認可등을 申請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用途變更으로 인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申告하는 때(用途變更申告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用途變更하기전을 말한다)에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8)

第19條의3 (附設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에 대하여 이를準用한다.

(全文改正 99·2·8)

第19條의4 (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등) ①附設駐車場은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가 附設駐車場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第19條의 12 (検査業務의 代行) 第19條의 9 및 第19條의 10의 規定에 의한 機械式駐車場의 檢査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專門検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本條新設 95·12·29)

第19條의 13 (機械式駐車裝置의 撤去) ①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附設駐車場에 設置된 機械式駐車裝置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撤去할 수 있다.

1. 機械式駐車裝置가 老朽·故障등으로 인하여 作動이 불가능한 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施設物의 構造 또는 安全上 撤去가 불가피한 경우

- ②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施設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함으로써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敷地 인근에 附設駐車場을 設置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機械式駐車裝置가 設置되었던 바다면적에 해당하는 駐車場은 당해 施設物 또는 그 敷地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8)

第六章 補 則

第20條 (國·公有財產의 處分制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데 필요한 土地는 이를 다른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으며, 관계行政廳은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積極協助하여야 한다.

②道路·廣場·公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등의 公共施設의 地下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의 實施計劃認可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都市公園法·學校施設事業促進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法令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거나 土地形質變更에 대한 協議등을 한 것으로 보며, 路外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土地 및 施設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 및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0·4·7, 91·12·14, 95·12·29>

③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地上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0·4·7>

第21條 (補助 또는 融資)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促進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주차장법시행규칙

-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등에 연접하여 배치
 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
 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서는 아니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
 분
- 다.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
 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
 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
 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
 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
 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9·5, 96·6·29, 2000·
 7·29>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
 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주차장법시행규칙

설

⑤법 제20조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6·6·29>

제 6 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 7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6·6·29)

제 7 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등) 법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12)

제 7 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법 제12조제 6 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00·7·29>

②법 제12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되, 최고한도는 영 별표 1의 설치기준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는 구역별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99·3·12, 2000·7·29>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第5條 (地方稅의 稅目) ①地方稅는 普通稅와 目的稅로 한다.

②普通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28, 2000·12·29 法6312>

1. 取得稅
2. 登錄稅
3. 競走・馬券稅
4. 免許稅
5. 住民稅
6. 財產稅
7. 自動車稅
- 7의2. 走行稅
8. 農業所得稅
9. 담배消費稅
10. 屠畜稅
11. 総合土地稅

③目的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0·12·29 法6312>

1. 都市計劃稅
2. 共同施設稅
3. 事業所稅
4. 地域開發稅
5. 地方教育稅

[全文改正 95·12·6]

第5條의2 削除 (95·12·6)

第6條 (地方自治團體의 稅目) ①特別市稅와 廣城市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廣城市的 郡地域에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道稅를 廣城市稅로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法6312>

1. 普通稅
 - 가. 取得稅
 - 나. 登錄稅
 - 다. 競走・馬券稅
 - 라. 住民稅
 - 마. 自動車稅

바. 走行稅

사. 農業所得稅

아. 附加消費稅

자. 庫蓄稅

2. 目的稅

가. 都市計劃稅

나. 共同施設稅

다. 地域開發稅

라. 地方教育稅

②道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0·12·29 法6312>

1. 普通稅

가. 取得稅

나. 登錄稅

다. 免許稅

라. 競走·馬券稅

2. 目的稅

가. 共同施設稅

나. 地域開發稅

다. 地方教育稅

③區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가. 免許稅

나. 財產稅

다. 綜合土地稅

2. 目的稅

事業所稅

④市·郡稅(廣城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28, 2000·12·29 法6312>

1. 普通稅

가. 住民稅

나. 財產稅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다. 自動車稅

라. 走行稅

마. 農業所得稅

바. 담배消費稅

사. 屠畜稅

아. 綜合土地稅

2. 目的稅

가. 都市計劃稅

나. 事業所稅

(全文改正 95·12·6)

第6條의2 削除 <95·12·6>

第7條 (公益等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①地方自治團體는公益上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公益上其他의事由로 因하여 必要한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 있다.

第8條 (受益等事由로 因한 不均一課稅 및 一部課稅) 地方自治團體는 그의一部에 對하여
특히 利益이 있다고 認定되는 事件에 對하여서는 不均一課稅를 하거나 또는 그의一部에 對
하여서만 課稅 할 수 있다

第9條 (課稅免除等을 為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
免 免除 ·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써定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98·12·31>

第9條의2 (天災 등으로 인한 減免)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天災 · 地變 기타 大統領
令이 정하는 特殊한 사유가 있어 地方稅의 減免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
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5·12·6>

(本條新設 94·12·22)

第10條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이 相馳되는 境遇의 措置)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課稅權의 隸屬其他이 法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他地方自治團體의 長과 意見을 달리하여
協議되지 아니 할 境遇에는 道內에 關한 것은 道知事, 數道에 걸쳐 있는 것에 關하여는 行政
自治部長官에게 그에 關한 決定을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67·11·29, 98·12·31>

②道知事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第1項의 決定의 請求
를 受理한 때에는 그 請求를 受理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이를 決定하여 遲滯 없이 그 뜻을 關

안산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099
------------	------

제안년월일 : 2002. 12. 7.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안산시에 납부할 산출기준 금액을 현행 안산시주차장조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공무원이 예상수익률 등을 판단하여 납부금액을 산출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외 주차장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제4조제3항4호를 삭제함
- 제11조제1항 중 “또는 노외주차장”을 삭제함.
- 부칙 제4조 전체를 삭제함.

안산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또는 노외주차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②(생략)</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3.(생략)</p> <p>4. 계약담당공무원은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각호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차장의 전년도 납부 실적과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②(원안과 같음)</p> <p>③.....</p> <p>1.~3.(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 삭 제 〉</u></p>
<p>제11조(보조) ①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집안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 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11조(보조) ①</p> <p>.....<u>〈삭제〉</u>.....</p> <p>.....</p> <p>②(원안과 같음)</p>
부 칙	부 칙
제1조~제3조(생략)	제1조~제3조(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p><u>제4조(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의 개정)</u> ①<u>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이 조에서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p> <p><u>6. 노외주차장의 바닥을 포장하는 비용을 보조로 하는 사업</u></p> <p>②<u>조례 제4조 본문 중 “제3조제1항 제5호” 다음에 “내지 제6호”를 삽입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p> <p><u>4. 노외주차장의 바닥을 포장하고자 하는 자</u></p> <p>③<u>조례 제5조제1항중 “내집안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신청”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집안주차장” 다음에 “ 및 노외주차장”을 삽입한다.</u></p> <p>④<u>조례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u></p> <p>⑤<u>노외주차장의 경우 포장후 3년</u></p>	<p><u>〈삭 제〉</u></p>